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외신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0. ~ 2.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27”을 “229”로 하고, 일반직 계 “225”를 “22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을 “21”로 하고, 행정사무관 “62”를 “6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27”을 “229”로 하고, 일반직 계 “225”를 “22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을 “21”로 하고, 행정사무관 “66”을 “67”로 한다.

별표 6 중 1.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한시정원) 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4월 30일까지</u>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둔다.	제24조(한시정원) ① ----- ----- ----- ----- ----- <u>2022년 8월 31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27</u>		<u>229</u>	+2	
일반직 계	.		.		.		
	.		.		.		
			<u>225</u>		<u>227</u>	+2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0</u>		<u>21</u>	+1	
행정사무관			<u>62</u>		<u>63</u>	+1	
	.		.		.		
	.		.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27</u>		<u>229</u>	+2	
	.		.		.		
	.		.		.		
일반직 계			<u>225</u>		<u>227</u>	+2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0</u>		<u>21</u>	+1	
행정사무관			<u>66</u>		<u>67</u>	+1	
	.		.		.		
	.		.		.		